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56호의2서식] 삭제 <2020. 12. 10.>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,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: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
-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신청인 성명,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
-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: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
-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안함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.
- 2.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- 3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, 개인택시운송사업자, 퀵서비스업자,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.
- 4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5.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.
- 6.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.
- 7. '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'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
작성방법

- 1. 신청인 '주소'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.
- 2.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3. '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'란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4. '업무 내용'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.
- 5. '근무시간'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.
- 6. 신청인은 '사업주 직종'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"√"를 합니다.
 -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, '자동차 종류'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'노선버스'에,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'비노선버스'에 "√"를 하며,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(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)에 "√"를 합니다.
 - ②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,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 -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, '자동차 종류'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'화물자동차(1톤이하)'를 선택하고,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'화물자동차(1톤초과)'에 "√"를 하며, 이 외의 경우에는 '특수자동차'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.
 - ④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'건설기계 종류'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.
 - ⑤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, '배송수단'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"√"를 합니다.
 - ⑥ 예술인의 경우, '예술활동 유형'은 작가,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'창작'에 "√"를 하고, 배우, 가수 등의 경우에는 '실연'에, 연출, 감독,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'기술지원'에 "√"를 합니다,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, 계약금액을 적습니다.